

사용자 단말기 보안관리 지침

제정 2019. 3. 7.
개정 2022. 7. 1.
개정 2025. 4. 1.
개정 2025. 9.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2조, 「부산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산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내에서 학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용자 단말기(PC 등)의 보안준수 세부 기준을 정하여 사용자 단말기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정보보안”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 ② “사용자”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③ “정보통신망”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④ “단말기”란 PC·노트북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은 제외한다.
- ⑤ “보안관리 소프트웨어”란 단말기 보안 소프트웨어로서 패치관리시스템(PMS: 백신, 보안패치관리, 내PC지키미), 개인정보파일 진단프로그램이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하는 보안관리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학교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전체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보안준수사항)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말기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안대책을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안관리 소프트웨어(①. PMS, ②. 개인정보파일 진단프로그램)를 반드시 설치·실행하여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말기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리스트】

단말기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기능
① 패치관리시스템 (PMS)	백신	바이러스 치료 소프트웨어
	내PC지키미	사용자 보안 진단 소프트웨어
	자동보안패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보안 패치
② 개인정보파일 진단 프로그램		개인정보파일 진단 소프트웨어

- 제5조(사용자 지원)** ① AX·정보화혁신본부장은 사용자가 캠퍼스내에서 학교 통신망에 단말기(PC 등)로 접속할 경우 보안관리소프트웨어를 자동 설치·실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AX·정보화혁신본부는 사용자에게 대한 PC 보안강화 및 자산조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단말기의 IP, OS, HW규격정보(CPU type, 메모리용량, 디스크용량), 소프트웨어 정보 등을 자동 수집할 수 있다.
- ③ AX·정보화혁신본부는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은 하지 말아야 하며, 단말기내에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이용 제한) AX·정보화혁신본부장은 학교 내에서 보안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단말기는 학교 정보통신망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행정업무용 단말기에 대해서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행정업무용 단말기에 대해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행정업무용 단말기에 대해서 202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